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
----------	----

제출일자 : 2001. 7. 5.

제출자 : 달성군



## □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10.20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

-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대학·공공청사·연수시설·공장 등)의 지방이전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재산평가액의 5% → 1% 이상으로 인하함(안 제22조제10항)
-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함 (안 제29조제2항)

### 2.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고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아래사항을 생략함(안 제7조제3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1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26조제6항).
-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함(안 제29조제1항)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 3. 재산관리의 효율화 세입증대

-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  
(안 제5조제2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함  
(안 제7조제2항)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안 제22조)
  - 일반용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공공용 :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 경작용 : 재산평정가격의 1% ⇒ 1%이상
  - 광업·채석용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주거용 :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6조의2)

개정조례안 및 근거법령 : 따로 붙임.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4호를 신설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기타 시설물”的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
3.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인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0조제1항 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 한다.

제11조 제목 “(사용허가의 제한)”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제1항중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제2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제목 “(사용허가기간)”을 “(사용·수익허가기간)”으로 하고, 본문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3조 제목 “(사용허가조건)”을 “(사용·수익허가조건)”으로 하고, 본문 중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각호의 “사용”를 “사용·수익”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본문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19조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0조제1항 중 “임대”를 “대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제2항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제3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제4항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하고, 제6항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고, 제6항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중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2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2층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군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구광역시달성군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가 제22조제6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료이자를 감면 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4항제3호 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잔여면적도 포함한다)”를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를 포함한다)”로 하며, 단서 중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제49조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u>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u>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u>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 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p> <p>①(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생략)</p> <p>2.<u>기타 중요재산에 관하여 재산 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p> <p>①(현행과 같음)</p> <p>②-----</p> <p>1.(현행과 같음)</p> <p>2.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p> <p>3.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p> <p>4.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p> <p>3.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u>행정재산</u>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1.광역시지역 : 30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2.군지역 : 900제곱미터이하 토지</p> <p>3.시가 1천만원이하의 기타재산</p> <p>④(생 략)</p>	<p>제10조(관리 및 처분) ①----- ----- <u>행정재산 · 보존재산</u>----- ----- -----.</p> <p>②〈삭제〉</p> <p>③〈삭제〉</p> <p>④(현행과 같음)</p>
<p>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제11조(사용 · 수익허가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 -----.</p>



현 행	개 정 안
<p><u>제19조(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등) 제18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 3.(생략)</p> <p><u>4. 군에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 안의 공유재산</u></p> <p>5.(생략)</p> <p><u>6. 기타 군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u></p>	<p><u>제19조(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등)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 지역의 공유재산</u></p> <p>1. ~ 3.(현행과 같음)</p> <p><u>4.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 지역의 공유재산</u></p> <p>5.(현행과 같음)</p> <p><u>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u></p>
<p><u>제20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u></p> <p>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u>임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② ~ ③(생략)</p>	<p><u>제20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u></p> <p>① ----- <u>대부</u> -----</p>
<p><u>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u>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u></p>

현 행	개 정 안
1. ~ 3.(생략)	1. ~ 3.(현행과 같음)
4. <u>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할 것이 확실하여 계약의 탈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에서 분할납부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u>	4. <삭제>
5.(생략)	5.(현행과 같음)
6.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u>	6.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의한 수급자</u>
② ~ ④(생략)	② ~ ④(현행과 같음)
제22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u>1,000분의 50</u> 으로 한다. 다만, 공용 ·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u>1,000분의 25</u> 로 한다.	제22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 <u>1,000분의 50이상</u>
②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대부료 또는 당해 토지사용료의 요율은 평정가격의 <u>1,000분의 10</u> 으로 한다.	<u>1,000분의 25이상</u>
③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u>1,000분의 50</u> 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③ <u>1,000분의 10이상</u>
	<u>1,000분의 50이상</u>

현 행	개 정 안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u>1,000분의 40</u> 으로 한다. 1. ~ 2.(생 략) ⑤(생 략)	④----- ----- ----- <u>1,000분의 40이상</u> ----- 1. ~ 2.(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요율은 <u>1,000분의 25</u> 로 한다. 다만,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경우에는</u>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u>1,000분의 10</u> 으로 한다.	⑥----- ----- <u>1,000분의 25이상</u>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u> ----- <u>1,000분의 10이상</u> ----- ⑦ ~ ⑨(생 략)
⑩ <신 설>	⑦ ~ ⑨(현행과 같음) ⑩ <u>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u>  1. <u>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내지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u>  2. <u>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u>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p> <p>①(생 략)</p> <p>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 의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한 차이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p> <p>③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없다.</p>	<p>제2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p> <p>①(현행과 같음)</p> <p>②〈삭제〉</p> <p>③〈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 투자기업에 <u>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u>  <u>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u>  <u>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u>  <u>하 이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u>  <u>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1.~3.(생략)</p>	<p>제2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      -----  <u>공유재산을 대부 또는</u>  <u>사용·수익허가</u>      -----      -----      -----      -----      -----      1.~3.(현행과 같음)</p>
<p>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⑤(생략)</p> <p><u>〈신설〉</u></p>	<p>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⑤(현행과 같음)</p> <p><u>⑥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u>  <u>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u>  <u>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u>  <u>출 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u>  <u>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u>  <u>용면적으로(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u>  <u>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u></p>
<p><u>〈신설〉</u></p>	<p>제26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u>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p> <p>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균에 유리한 때</p> <p>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p> <p>3. 기타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p> <p>③ 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제27조(대부료등의 납기)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u></p>	<p><u>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구광역시달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u></p>
<p><u>②제1항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u></p> <p><u>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제27조(대부료등의 납기)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u></p> <p><u>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제29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u></p>	<p><u>제29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 요율)①-----</u></p> <p><u>--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납부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료를 감면을 할 수 있다.</p> <p>③(생략)</p> <p>〈신설〉</p>	<p>②군수가 제22조제6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현행과 같음)</p> <p><u>제29조의2(변상금의 청문등)</u>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9조(수의계약 매각 범위 등)</p> <p>①~③(생략)</p> <p>④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생략)</p>	<p>제39조(수의계약 매각 범위 등)</p> <p>①~③(현행과 같음)</p> <p>④----- ----- -----</p> <p>1. ~ 2.(현행과 같음)</p>

